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판 결

사 건 2019가단10820(본소) 손해배상(기)  
2019가단15160(반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강  
담당변호사 안우신, 장대겸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암  
담당변호사 부봉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손정윤

변 론 종 결 2021. 6. 3.

판 결 선 고 2021. 7. 15.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008,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4.부터 2021. 7. 1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9/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



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58,024,040원 및 그 중 37,95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98,074,040원에 대하여는 2018. 7.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47,931,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장기 및 주변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1. 3. 피고에게 MES 시스템(생산관리시스템,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구축을 98,074,04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C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주)A C 시스템 구축 계약서				
계약기간	시스템 구축기간: 2016. 12. 7. ~ 2017. 9. 30. 계약 종료일: 완료점검 후 시스템구축기간 까지			
대금지급	1) 정부 지원금: 대금지급은 D재단과의 협약서에 따른다. 49,000,000원(부가세 미포함, 부가세는 수요기업 부담)			
	착수금 (계약 후 14일 이내)	잔금 (정부지원금 잔금 입금 후 14일 이내)	합계	
	24,500,000원	24,500,000원	49,000,000원	
	2) 수요기업 부담금 49,074,040원(부가세 미포함)			
	착수금 (계약 후 14일 이내)	중도금 (2017. 4. 중간보고 후 14일 이내)	잔금 (2017. 9. 완료보고 후 14일 이내)	합계
	10,000,000원	20,000,000원	19,074,040원	49,074,040원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D재단의 스마트공장 사업 범위인 MRP 계약을 확장한 계약으로 확장 범위인 MES 시스템 도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의무)				
2. 피고는 시스템 개발 완료 후 원고에게 프로그램 최종본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및 운영 교육에 대해서 원고가 요청한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3. 원고는 피고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제공 및 면담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				



고,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와 필요한 장비 및 비품을 제공한다.

5. 피고는 피고의 업무수행 인력을 적기에 투입하여야 하며, 만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인력의 추가투입, 교체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 원고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제3조(시스템구축 대상)

시스템은 MES로 한다.

#### 제4조(시스템구축 업무의 범위와 내용)

구체적인 시스템 사용의 범위와 내용은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 제5조(계약의 해지, 피해보상)

1. 본 계약 사항을 원고와 피고 어느 일방이 고의적으로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은 그에 대한 시정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시에는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3.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시 원고는 해지시점까지의 시스템 구축 비용을 기 지급 대금의 차액을 정산하여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게 지급한다.
4.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가 계약상 지급한 금전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와 피고 중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액은 계약금액으로 한다.  
단, 시스템 구축비용을 초과하는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5. 계약의 해지시 피고는 그동안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서류,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원고에게 반환하며, 그동안 실행한 계약의 모든 결과를 원고에게 제공한다.

#### 제6조(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1. 하자라 함은 시스템구축 과정에서 피고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별첨(구축대상)에 제시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원고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단, 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하자로 보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최종검수 완료일(원고가 검수 완료 인정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피고가 제공하거나 개발한 부분에 대하여 12개월간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무상유지보수 기간 이후에는 유상유지보수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며 매월



1,200,000(부가가치세 별도)의 유지보수비가 발생한다.

제8조(상호협조)

2. 피고는 계약 이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원고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계약내용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는 필요한 사항을 피고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사항)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 내용에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각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기타사항)

1. 사업계획서상 구축기간은 총 9개월(2016. 12. 7. ~ 2017. 9. 30.)을 구축기간으로 하고, 2017. 9. 30. 이전 원고의 최종검수 및 스마트공장 완료점검이 끝나면 사업완료로 정하여 정부지원금 잔금지급 이전에 원고는 잔금을 지급한다. 최종검수 지연에 따른 투입인력 공수 및 사업비용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
2. 계약기간 중 계약의 변경(본 계약서의 수정 또는 새로운 사항 등)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하고, 서명 날인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별도로 추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첨부 1. Application 목록표 (사업범위) 1부(별지 1, 2와 같음)

2. H/W 목록표 1부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2. 7. 이 사건 계약의 착수금 명목으로 37,950,000원, 2017. 7. 13. 이 사건 계약의 중도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원인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9. 30.까지 이 사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8. 6. 28.까지 이 사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8. 6. 28.경 이 사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것을 최고하였고, 피고는



2018. 7. 17. 이 사건 시스템 구축 완료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3) 이로써 이 사건 계약은 2018. 7. 17.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4항은 '원고와 피고 중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액은 계약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피고는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시스템 구축 완료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고, 그밖에 이 사건 시스템 교육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6)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 계약금 37,950,000원, 중도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급일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상당액 98,074,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관련 법리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등 참조).

####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김정인 E의 일부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 F이 2018. 7. 17. 15:23경 피고의 직원에게 '지난 번 회신 내용에 7월 3째주 일정 회신 주셨는데 정확한 회의 일자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회의 필요 내용은 영업 금액 부분과 회계, 연동 부분 그리고 기술 bom 연동 관련 데이터 편집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G이 2018. 7. 17. 18:38경 F에게 '당사는 회계연동을 위해 약 10개월 동안 담당자를 지정하여 개발을 하였고, 20회 정도 A의 요청에 의하여 회계업무를 위한 출장을 진행하였습니다. 즉, 업무 개발을 위한 주관자는 A였기 때문에 미개발에 대한 모든 책임은 A에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만일 A개발 담당자와 H 개발자를 불러서 B이 주관하여 개발하였다면 저희 책임일 것입니다. 당사는 충분한 기간과 사람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동 개발이 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하여 개발 담당자<sup>1)</sup>를 사기로 고소하고 싶은 심정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저희가 당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내용을 보면 B 개발인력을 불러다 놓고 사용법을 익힌다든지 아니면 개발지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는 것을 시간을 80% 이상 허비했던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중략) 그렇게 수십회의 출장을 가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개발했다고 하지만 미 수행된 개발 일들에 대하여 전혀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원래 고객의 요구에 대하여 다툼은 있을지언정 끝까지 개발

1) 위 '개발 담당자'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측 개발담당자를 가리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으나, 문맥상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계약 담당자인 F(A개발담당자)을 가리키는 취지로 이해될 여지도 있다.



을 책임진다는 내부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A가 요구하는 개발은 개발비에 대하여 pdm, 회계관리까지 처리해야 하는 고노동/저비용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계연동에 대한 요구사항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는 사항입니다. 간단히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출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회계연동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이 저의 현재 심정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한 사실, 원고는 2018. 12. 10.경 주식회사 I에 계약금액을 121,403,700원으로 하여 MES, SCM 구축 및 연동 업무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감정인 E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이행의 정도(기성고)에 대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기성률 89.875%라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일부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감정인 E은 'MES 구축과 관련하여 사업 범위에 명시된 3가지 기능이 모두 개발이 완료되었고 하자 없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6. 결어, 가-1 감정요청사항2)), ㉡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범위 및 프로그램 목록은 3수준 이하의 기능 정의로 설계단계의 활동을 통해 쌍방이 프로그램 사양서 수준의 상세화가 진행되어 있어야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가-2, 가-1 감정요청사항에 대한 답변), ㉢ 프로그램 목록의 경우 상세 사항이 상호 합의 확정되어야 하나 (원고의) 지속적인 요구사항 변경으로 설계단계에서

2) 감정서의 '6. 결어'의 '가-1' 부분은 원고의 감정신청사항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어서 감정인의 의견이 아니다 (한편, 피고가 계속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감정결과라고 원용하고 있는 '나-1', '다-1' 부분 또한 피고가 2019. 9. 17.자 준비서면 가. (1)항 및 나. (4)항에서 감정절차에 대한 의견으로 기재한 부분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여 감정인의 의견이 아니고, '나-2', '다-2'의 기재 즉, '피고가 납품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상세 사항이 상호 합의 확정되어야 하나, 지속적인 요구사항 변경으로 설계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100%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연동의 경우 연동의 방향, 연동 데이터, 연동 주기 등 상세 사항이 상호 합의 확정되어야 하나, 지속적인 요구사항 변경 및 상호 이견으로 설계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동이 100%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나-1', '다-1'에 대한 감정인의 의견이다. 이는 아래에서 보는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과 관련이 있다).





확정되지 않았다. 회계프로그램과 PLM 연동의 경우에도 연동의 방향, 연동 데이터, 연동 주기, 연동 방식, 연동 조건 및 연동 주체와 연동 대상의 환경 등 상세 사항이 상호 합의 확정되어야 하나, (원고의) 지속적인 요구사항 변경 및 상호 이견으로 설계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았다(가-3, 가-1 감정요청사항에 대한 답변), ㉞ 본 사건 수행에 있어서 설계단계 활동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었으므로 수행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성을 89.875%로 대체할 수 있다(가-4, 가-1 감정요청사항에 대한 답변).’라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는바(감정서 제69, 70쪽), 이는 이 사건 계약의 특성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수행하여야 하는 이 사건 시스템 구축 의무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채무불이행을 하였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점, ② 피고는 2018. 1. 8.경 J 사용자 매뉴얼 '회계연동 항목'을 작성하였는데 그 안에는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연동 등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는 2018. 1. 11.경 원고에게 'MRP 회계연동 사항 안내 및 교육안내의 건'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공문에는 '회계연동완료 사항, 1) 코드성 데이터 연동, 2) 분개항목 사용자 입력, 3) 선금금, 선수금, 매출계산서 항목 및 전표처리, 4) 커미션 지급처리 항목 및 전표 처리, 5) 수금관리, 지급관리 연동, 6) 출장, 외출 지출결의서 항목 및 전표처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늦어도 위와 같이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고 2018. 1. 11.자 공문을 발송한 무렵인 2018. 1.경에는 이 사건 계약서상 '사업범위'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타 회계 프로그램과 매입, 매출, 재고자산전표 연동'에 관한 시스템 구축 의무의 대부분을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상 '사업범위'로 명시되어 있어 피고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한 '타 회계 프로그램과 매입, 매출, 재고자산전표 연동' 업무



외에 원고의 직원 F이 2018. 7. 17.자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에게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명시적으로 거절한 업무인, '영업 금액 부분, 회계 연동 부분, 기술 bom 연동 관련 데이터 편집 부분'에 관한 시스템 구축 의무가 이 사건 계약상 피고의 시스템 구축 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일부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가 2018. 7. 17.경 이 사건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시스템 교육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시스템 구축 업무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대금 107,881,400원(= 98,074,000원 및 그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9,950,000원(= 54,500,000원 및 그 부가가치세 포함)만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47,931,400원(= 107,881,400원 - 59,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일부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된 이 사건 시스템 구축 의무를 대부분 완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감정인 E의 일부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관계 법령상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은 분석(요구검토, 요구확정), 설계(설계, 검토, 확정), 구현(개발, 단위시험, 보완), 시험(통합시험, 보완, 정리) 단계로 구분되고, 각 단계별로 분석 단계는 19%, 설계 단계는 24%, 구현 단계는 32%, 시험 단계는 25%의 수행 비율이 인정되는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분석 단계의 활동을 수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구현 단계의 활동에 해당하는 개발 업무에 착수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분석 단계의 활동에 해당하는 요구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개발된 프로그램의 품질 및 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유발한 잘못이 있는 한편, 피고는 설계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은 매뉴얼(설계 단계에서의 산출물)이라고 하더라도 초안을 원고에게 제시하는 등으로 원고가 매뉴얼을 참고하여 이 사건 시스템에 대한 자신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뉴얼 초안의 제시 없이 개발 결과물을 바로 제시함으로써 원고가 요구사항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는 점, ③ 용역 결과 개발된 프로그램에 일부 오류가 발생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으나, 이는 정부지원금을 위한 완료 보고라는 기회<sup>3)</sup>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설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원고는 지속적인 요구사항 변경을, 피고는 그에 따른 추가·변경 대응을 한 것에 원인이 있는 점, ④ 최종 완료보고 및 검수 활동을 통하여 시험 단계가 완성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피고가 완료보고 이후의 유지보수성 활동을 수행하였고, 원고의 지속적인 개발 요구 추가·변경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시험단계 최종

3) 이 사건 계약의 대금 중 약 50%에 해당하는 49,000,000원은 정부지원금이다.



확정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점, ⑤ 감정인은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설계 단계 확정활동의 25%, 구현 단계 확정활동의 25%, 시험 단계 확정활동의 25%가 각각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하였고, 이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균등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시스템의 기성률은 89.875% [= 100% - 각 단계별 미흡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책임 비율 합계 10.125% (= ㉠ 설계 단계의 수행비율 24% × 미흡한 정도 25% × 피고의 책임 비율 50% + ㉡ 구현 단계의 수행비율 32% × 미흡한 정도 25% × 피고의 책임 비율 50% + ㉢ 시험 단계의 수행비율 25% × 미흡한 정도 25% × 피고의 책임 비율 50%)]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⑥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시스템 구축 의무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지 못한 채 2018. 7. 17.자 이메일을 통하여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이에 응소한 후 원고가 제3자를 통하여 이 사건 시스템을 대체하는 내용의 MES 시스템을 개발하게 됨으로써 원고와 피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시스템 구축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고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로써 피고는 그에 해당하는 의무 이행을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대금 청구권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정된 대금의 89.87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7,008,447원 [= (= 약정 대금 98,074,040원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110% × 위 89.875%) - 기지급 대금 59,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9. 3. 24.부터 원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15.까지는 상법에 규정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성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9-06

## 1. 어플리케이션 목록표

[첨부 1] Application 목록표 1-1

모듈명	기능명	상세내역	
기준정보관리	거래처관리	거래처(매출,매입,매입매출,기타 거래처)를 등록,수정,삭제	
	품목코드관리	품목코드를 등록,수정,삭제	
	모든BOM관리	BOM을 등록, 수정, 삭제	
공통코드	공통코드관리	시스템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코드의 등록,수정,삭제	
	참고관리	수출참고의 등록,수정,삭제	
	부서관리	부서의 등록,수정,삭제	
	환율관리	환율의 등록,수정,삭제	
	사용자관리	사용자의 등록,수정,삭제	
	프로그램관리	사용자권한관리	사용자의 권한을 등록,수정,삭제
		업데이트이력관리	업데이트 이력을 조회할수 있는 화면
사용자프로그램보		사용자의 사용자프로그램 조회할수 있는 화면	
공지사항관리		공지사항을 등록,수정,삭제	
판매견적	견적관리	업체별 제품 견적 등록,수정,삭제	
수주/진행관리	수주등록	수주정보의 등록,수정,삭제	
	BOM등록	업체BOM의 등록,수정,삭제	
	생산요령관리	생산요령의 등록,수정,삭제	
	물하지시관리	물하지시의 등록,수정,삭제	
	거래명세서관리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의 조회 및 인쇄	
물류관리	출하관리	출하정보의 등록,수정,삭제	
매출관리	매출확인/세금계산서관리	매출정보의 조회 및 세금계산서 발급	
	미수금관리	미수금정보의 조회 및 등록	
AS	AS관리	AS정보의 접수,처리정보의 등록,수정,삭제	
자재기준정보	LOT관리	품목별LOT생성규칙의 등록,수정,삭제	
구매기준단가	구매기준단가관리	품목별구매기준단가의 등록,수정,삭제	
발주관리	구매견적관리	견적정보의 등록,수정,삭제	
	구매품의관리	구매품의 등록,수정,삭제	
	구매발주관리	구매발주정보의 등록,수정,삭제	
	소요량분석(MRP)	BOM을 통한 자재소요량 자동계산	
자재입고관리	가입고관리	입고품목에 대한 가입고상태 등록,수정,삭제 (재고등록X)	
	정입고관리	입고품목에 대한 정입고상태 (재고등록)	
구매확정관리	구매확정관리	구매품목에 대한 수량,단가의 확정정보의 등록,수정,삭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9-06

[첨부 1] Application 목록표 1-2

모듈명	기능명	상세내역
자재불출/출고관리	자재요청관리	자재요청정보의 등록,수정,삭제
	자재불출관리	자재불출정보의 등록,수정,삭제
	자재출고관리	자재출고정보의 등록,수정,삭제
재고관리	재고실사관리	재고차이분에 대한 등록,수정,삭제
	자재마감관리	월별 자재마감정보의 등록,수정,삭제
	자재이동관리	자재이동정보의 등록,수정,삭제 (창고별)
	수주별재고정리	수주별 재고정보의 등록,수정,삭제
수불관리	통합수불	수불내역에대한 전체품목의 조회
	재고현황	품목재고 정보에 대한 조회
생산기초정보	생산라인/설비/공정관리	생산라인,설비,공정에 대한 등록,수정,삭제
	불량사유코드관리	불량사유코드의 등록,수정,삭제
생산관리	생산계획관리	생산계획정보의 등록,수정,삭제
	생산지시관리	생산지시정보의 등록,수정,삭제
	생산실적관리	생산실적정보의 등록,수정,삭제
	반납관리	생산 후 원자재 반납 정보 등록,수정,삭제
공정관리	작업지시현황/아동표출력	작업지시현황 조회, 공정이동표 출력 기능
	공정이동	공정이동 처리 (실적화면), 키오스크에서 사용
자재요청	생산_자재요청관리	생산을 위한 자재요청정보의 등록,수정,삭제
재고관리	재고현황	품목별 재고현황 조회
품질관리기초정보	검사항목/품목관리	품목별 검사항목에 대한 등록,수정,삭제
	QA불량코드관리	검사별 불량코드에 대한 등록,수정,삭제
수입검사	수입검사관리	수입검사 정보의 등록,수정,삭제
공정검사	공정별검사관리	공정검사 정보의 등록,수정,삭제
	공정별체크시트관리	공정별체크시트의 등록,수정,삭제
제품검사	제품검사관리	제품검사 정보의 등록,수정,삭제
	제품검사체크관리	제품검사체크시트의 등록,수정,삭제
RFID	로그인	로그인 기능
	태그관리	RFID태그의 쓰기,지우기 기능
	발주입고	발주에대한 입고처리 등록
	출고관리	원자재 출고 기능
	출하관리	제품 출하 기능, 인수서명 기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9-06

## 2. 사업범위

### [사업범위]

1.  범위 내 Application 목록 포함
2. 타 회계 프로그램과 매입, 매출, 재고자산전표 연동
3. PLM 연동 (품목정보, BOM연동)